

수의사법 설명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목 차

- I** 동물보건사 관련 주요내용
- II** 법령 제·개정 절차
- III** 수의사법 구성 체계
- IV** 수의사법 3단 비교표

I. 동물보건사 관련 주요내용

1. 용어의 정의

- 동물보건사란 **동물병원 내*에서(공간적인 제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 *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 신고를 하였으나, 출장진료만 전문으로 하는 동물병원은 제외
- 동물이란 소, 말, 돼지, 양, 개 토끼, 고양이, 조류, 꿀벌, 수생동물, 노새 · 당나귀, 친칠라 · 밍크 · 사슴 · 메추리 · 꿩 · 비둘기, 시험용 동물, 그 밖에 포유류 · 조류 · 파충류 및 양서류를 말한다
- 수의사란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면허(≠ 동물 보건사는 자격*)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 * 면허 : 일반인에게는 허가되지 않은 특수한 행위를 특수한 사람에게만 허가하는 행정처분
 - * 자격 : 일정한 신분이나 지위를 가지거나 일정한 일을 하는데 필요한 조건이나 능력

2. 결격사유

- 동물보건사는 「수의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6(준용규정)에 따라 제5조(결격사유)를 준용하기 때문에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농식품부 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음

1. 정신질환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마약, 대마, 그 밖의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 * 피성년후견인 :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 * 피한정후견인 : 종전의 한정치산자로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

3. 자격의 등록

- 법 제16조의6(준용규정)에 따라 제6조(면허의 등록)를 준용하기 때문에 자격에 관한 사항을 자격대장에 등록하고 그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함
-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안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안됨. 이를 위반한 경우 법 제39조(벌칙) 제2조에 해당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併科)할 수 있음**
- 자격대장에 등록해야 할 사항은
 1. 자격번호 및 자격 연월일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성명,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및 성별)
 3. 출신학교 및 졸업연월일
 4.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5. 자격증을 재발급하였거나 자격을 재부여했을 때에는 그 사유

4. 수험자의 부정행위

- 법 제16조의6(준용규정)에 따라 제9조의2(수험자의 부정행위)를 준용하기 때문에 부정한 방법으로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그 합격을 무효로 함**
- 또한,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은 **그 후 두번까지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5. 동물보건사의 자격

- 법 제16조의2(동물보건사의 자격)에 따라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함

① 기본(일반응시자)	② 특례(특례대상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평가인증을 받은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u>에서 동물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2. <u>평가인증을 받은 평생교육기관</u>의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상응하는 동물간호 관련 교육과정 이수 후 동물간호 업무에 1년 이상 종사자 3. 외국의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을 가진 사람 ☞ 농식품부령으로 정한 교육과목, 교수인력, 실습시설 등을 갖추고 농식품부 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학교(교육기관)여야 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간호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졸업 후 동물병원에서 1년 이상 종사자 3.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 중 동물병원에서 3년 이상 종사자 ☞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에서 120시간의 실습교육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 가능

- 동물보건사 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동물보건사의 자격인증) 제1호에 따라 서류, 사진을 제출하여야 함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자격조건 충족,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자격인정을 한 경우에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0일 이내에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발급해야 함

6. 동물 간호 관련 업무

- 법 제16조의2 제2호에 따라 ‘동물 간호 관련 업무’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7(동물보건사의 업무범위와 한계)* 각호의 업무를 말함
 - * 1. 동물의 간호 업무 : 동물에 대한 관찰, 체온·심박수 등 기초 검진 자료의 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 2. 동물의 진료 보조 업무 : 약물 도포, 경구 투여, 마취·수술의 보조 등 수의사의 지도 아래 수행하는 진료의 보조

7. 동물보건사의 자격시험

- 법 제16조의3(동물보건사의 자격시험)에 따라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매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시행함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동물보건사의 자격시험의 관리를 시험관리 능력이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음
 - * 위탁 : 법률 행위나 사무의 처리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 부탁하는 일
 - * 위임 : 당사자 중 한쪽이 상대방에게 사무처리를 맡기는 것(행정기관 간에는 위임, 행정기관에서 민간으로는 위탁)
-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4(동물보건사의 자격시험의 실시 등)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시행일 90일 전까지 시험일시, 시험장소, 응시원서 제출기한 및 그 밖의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함
-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시행과목은 1. 기초 동물보건학, 2. 예방 동물보건학, 3. 임상 동물보건학, 4. 동물 보건·윤리 및 복지 관련 법규이며, 필기시험 방법으로 실시함
-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합격자는 각 과목당 시험점수가 100점을 만점으로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함

8. 양성기관의 평가인증

- 법 제16조의4(양성기관의 평가인증)에 따라 동물보건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음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5(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평가인증)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으려는 양성기관은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양성기관 평가인증 신청서에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 *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양성기관의 업무 수행에 적합할 것
 - 2.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교수 및 운영 인력을 갖출 것
 - 3. 교육시설·장비 등 교육여건과 교육환경이 양성기관의 업무 수행에 적합할 것
- ** 1. 해당 양성기관의 설립 및 운영 현황 자료
- 2. 제1항 각 호의 평가인증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및 자료

9. 양성기관의 평가인증 취소

- 법 제16조의4 제2항에 따라 양성기관의 평가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평가인증 취소사유와 10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통보해야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소명자료 제출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소명자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평가인증을 취소함

10. 준용규정

- 법 제16조의6(준용규정)에 따라 제5조(결격사유), 제6조(면허의 등록), 제9조의2(수험자의 부정행위), 제14조(신고), 제32조제1항제1호·제3호(면허의 취소), 같은 조 제3항(면허 재교부), 제34조(연수교육), 제36조제3호(청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의사”는 “동물보건사”로,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본다.

11. 면허의 취소 및 면허효력의 정지

- 법 제32조(면허의 취소 및 면허효력의 정지), 제16조의6(준용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했을 때 자격을 취소할 수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자격이 취소된 사람이 법 제5조(결격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자격증 대여의 사유로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났을 때 자격을 다시 부여할 수 있음

12. 수수료(1)

- 법 제38조(수수료)에 따라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동물보건사 자격을 다시 부여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를 내야함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수수료)에 따라 다음 각호의 수수료를 내야하며 동물보건사 응시원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함
 1.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 : 2천원
 2.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 2만원
 3. 동물보건사 자격을 다시 부여받으려는 사람 : 2천원
 4. 자격증 재발급 및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는 수입인지, 자격 재부여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12. 수수료(2)

-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함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접수마감일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3.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사람이 시험일 이후 30일 전까지 응시수수료의 반환을 신청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조부모·형제·자매, 배우자 및 자녀가 사망한 경우(시험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7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로 한정한다)

나.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

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찰·치료·입원 또는 격리 처분을 받은 경우

13. 부칙(법률 제16546호, 2019. 8. 27.)

- 법 제2조 제3의2(동물보건사의 정의), 제16조의2(동물보건사의 자격)부터 제16조의6(준용규정), 제38조(수수료), 제39조제1항제1호(벌칙)의 개정규정을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21. 8. 28)부터 시행함
- 부칙 제2조(동물보건사의 자격시험 응시에 관한 특례)에 따라 제16조의2(동물 보건사의 자격)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21. 8. 2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에서 실습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1.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이와 동등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한 후 동물병원에서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을 통하여 업무 종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
 3.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 중 동물병원에서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을 통하여 업무 종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

<수의사법 문제 예시>

1. 우리나라 법령의 일반적인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 ② 법령이란 법률 · 대통령령 · 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 ③ 법률의 제 · 개정의 입법 제안은 정부입법 또는 국회의원 입법 모두가 가능하다.
- ④ 국회에서 제 · 개정된 법률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장이 공포한다.
- ⑤ 법률은 국회에 제 · 개정의 권한이 있다.

2. 「수의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 ① 수의사란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 ② 동물이란 소, 말, 돼지, 양, 개, 토끼, 고양이, 조류(鳥類), 꿀벌, 수생동물(水生動物),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 ③ 동물진료업이란 동물을 진료[동물의 사체 검안(檢案)]을 포함한다]하거나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업(業)을 말한다.
- ④ 동물보건사란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 ⑤ 동물병원이란 동물진료업을 하는 장소로서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한 진료기관을 말한다.

3. 동물보건사의 자격의 등록, 자격증 및 자격대장 등록사항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된다.
- ②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併科)할 수 있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였을 때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동물보건사 자격대장에 등록해야 할 사항은 자격번호 및 자격 연월일, 성명·성별 및 주민등록번호, 출신학교 및 졸업 연월일이다.
- ⑤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격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의 6 서식의 신청서에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4. 동물보건사 자격사항에 응시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 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 보건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②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하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 라 한다)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 ③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을 가진 사람
- ④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실습교육을 이수한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⑤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실습교육을 이수한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 중 동물병원에서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은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시험일 90일전까지 시험일시, 시험장소, 응시원서 제출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 ③ 동물보건사의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기초 동물보건학, 예방 동물보건학, 임상 동물보건학, 동물 보건·윤리 및 복지 관련 법규이다.
- ④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은 필기 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 ⑤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합격자는 전 과목의 평균 점수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이고, 각 과목당 시험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6. 다음 중 수의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동물보건사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는 동물에 대한 관찰, 체온·심박수 등 기초 검진자료의 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약품 도포, 경구 투여, 마취·수술의 보조 등 수의사의 지도 아래 수행하는 진료의 보조이다.
- ② 동물보건사에 대해서는 수의사법 제5조, 제6조, 제9조의2, 제14조, 제32조제1항제1호·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34조, 제36조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의사”는 “동물보건사로,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본다.
- ③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 ④ 처방전 발급수수료의 상한액을 5천원으로 한다.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보건사 자격의 취소를 처분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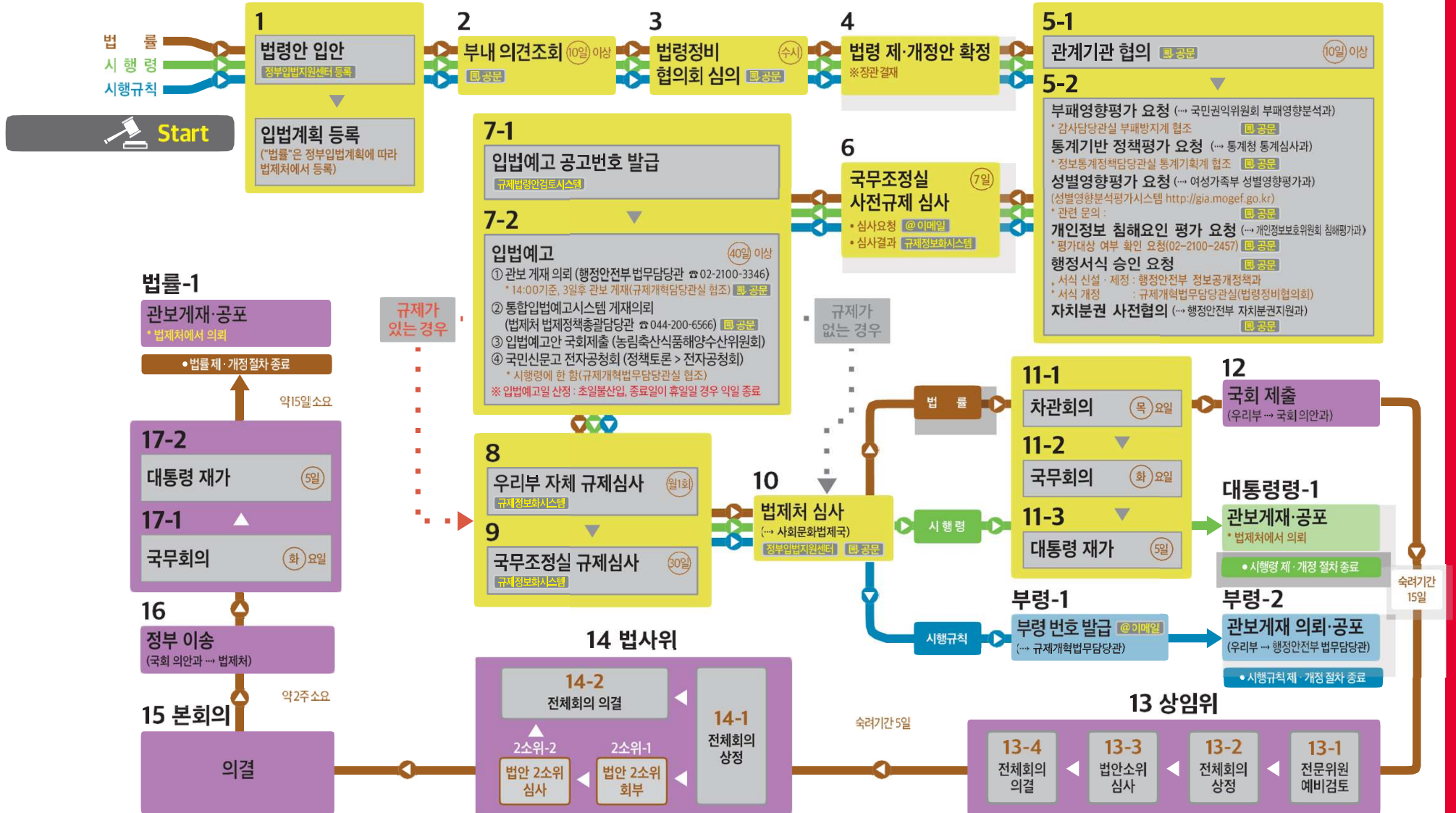
<문제 정답 및 해설>

문제번호	정답	해설
1	4	국회에서 재·개정된 법률을 원칙적으로 대통령이 공포함.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되어 국무회의·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공포됨
2	2	동물의 정의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함
3	4	동물보건사 자격대장에 등록해야 할 사항 중 성별은 해당되지 않음
4	1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동물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임
5	5	동물보건사자격시험의 합격자를 각 과목당 시험점수가 100점을 만점으로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함
6	3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반환해야 함

Ⅱ. 법령 제 · 개정 절차

법령 제·개정 절차

※ 법제절차 전 과정은 정부입법 지원센터(www.lawmaking.go.kr)에 반드시 입법 단계별로 등록 진행



* 의원발의안의 경우 ①번부터 진행됨.

1. 국회위원 입법

- 국회는 3권 분립주의하의 유일한 입법기관이므로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발안하여 입법하는 것이 원칙**
- 사회가 전문화 · 분업화 · 기술화되고 자본주의가 고도화됨에 따라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하여 신속 ·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행정부의 입법조치 필요**
- **한국 헌법은 국회의원과 정부에 모두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하고(헌법 52조), 의원입법에 있어서는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규정(국회법 79조 1항)

2. 정부 입법

가. 정부입법 절차(약 6개월 이상 소요)

1. 입법계획의 수립 → 2. 법령안의 입안 → 3. 관계기관과의 협의 →
4. 사전 영향평가 → 5. 입법예고 → 6. 규제심사 → 7. 법제처 심사 →
8. 차관회의 · 국무회의 심의 → 9. 대통령 재가 및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 → 10. 국회 제출 → 11. 국회 심의 · 의결 → 12. 공포안의
정부 이송 → 13. 국무회의 상정 → 14. 공포

나. 단계별 절차 안내

1. 입법계획의 수립

매년 정부입법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하여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면,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입법수요를 파악하여 법령안 별로 입법의 필요성, 주요내용, 추진일정, 입법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포함한 입법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11월 30일까지 법제처에 제출

2. 법령안의 입안

정책의 주무부처인 중앙행정기관이 그 소관사항에 대하여 법령안을 입안

3. 관계기관과의 협의

법령안 주관기관이 법령안을 입안하면 그 법령안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견을 사전에 조정하기 위하여 그 내용과 관련이 있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

4. 사전영향평가

행정기관이 법령을 제정·개정하려는 경우 법령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 성평등에 미칠 영향, 지역인재 고용에 미치는 영향, 개인정보 침해요인, 정책과 제도의 집행·평가에 적합한 통계의 구비 여부, 자치분권 원칙에 대한 적합성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여 그에 대한 사전정비 및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강구하는 과정

5. 입법예고

법령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예고하여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에 반영함으로써 입법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내용의 민주화를 도모하여 법령의 실효성을 높여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

6. 규제심사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규제영향분석, 자체 심사의견 등을 첨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

7. 법제처 심사

법제처에서는 법령안의 자구·체계 등의 형식적 사항 뿐만 아니라 헌법이념 및 상위법과의 위반여부, 다른 법령과의 중복·충돌여부, 입법내용의 적법성 등 실질적인 사항에 대하여도 심사를 하여 원안을 수정·보완

8.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법률안과 대통령령안에 대하여 법제처의 심사가 완료되면 그 법령안의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의 심의

9. 대통령의 재가 및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법령안(법률안·대통령령안)은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고, 대통령이 재가

10. 국회 제출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법률안은 법제처에서 지체 없이 대통령 명의로 국회에 제출

11. 국회의 심의·의결

-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한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 소관 상임위원회는 전체회의 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법률안을 심사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심사
- 소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친 법률안은 다시 법률안의 자구와 체계 심사를 위하여 법제심사위원회에 회부
- 법제심사위원회에서 자구·체계가 정리된 법률안은 다시 국회 본회의에 회부

12. 공포안정부 이송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공포를 위하여 정부에 이송

13. 국무회의 상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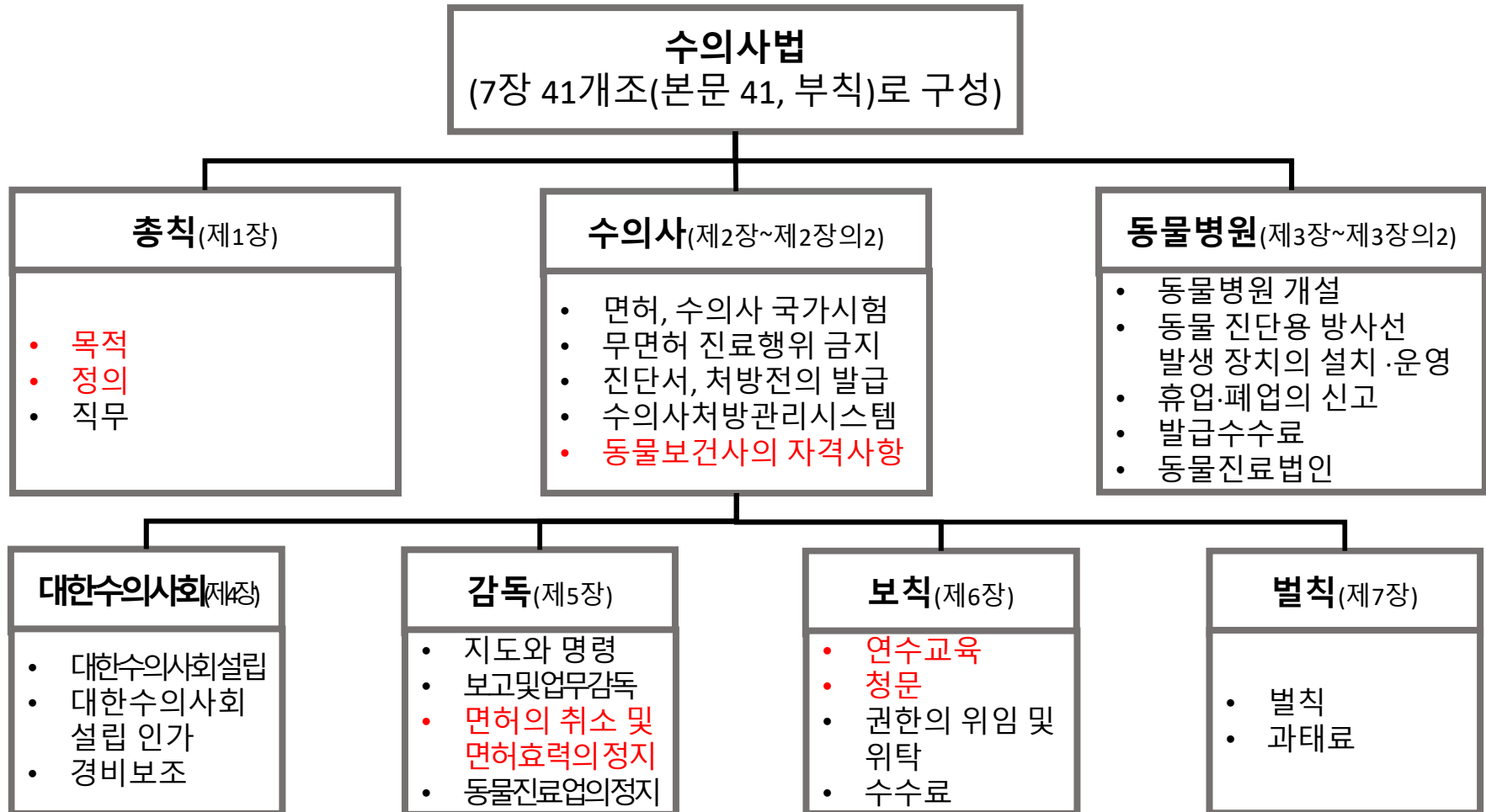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어 오면 법제처는 국무회의 상정
안건의 작성요령에 따라 법률공포안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에
상정

14. 공포

-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은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됨으로써
각각 법률 및 대통령령으로 성립
- 부령은 법제처 심사가 완료된 후 소관 부처에서 해당
부령의 공포번호를 부여(국무회의에 미 상정됨)

Ⅲ. 수의사법 구성 체계

1. 수의사법 구성 체계



2. 주요내용

- 「수의사법」 제정 및 운영 목적(제1조)
- 용어(수의사, 동물, 동물진료업, **동물보건사**, 동물병원)의 정의(제2조)
- 수의사 면허, 결격사유, 국가시험, 진단서·처방전 발급, 수의사처방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동물보건사에 관한 사항**(제4조~제16조의6)
- 동물병원 개설, 휴·폐업, 공수의, 동물진료법인 운영에 관한 사항 (제17조~제22조의5)
- 대한수의사회 설립 등에 관한 사항(제23조~제29조)
- 수의사 및 동물병원에 대한 지도와 명령, 면허자격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제30조~제33조의2)
- 연수교육, 청문, 수수료,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제34조~제41조)

IV. 수의사법 3단 비교표

- 빨간색으로 표시된 조문은 필히 암기
- 파란색으로 표시된 조문은 내용 파악
- 검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참고

수의사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의사의 기능과 수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건강증진,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의사"란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동물"이란 소, 말, 돼지, 양, 개, 토끼, 고양이, 조류(鳥類), 꿀벌, 수생동물(水生動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3. "동물진료업"이란 동물을 진료[동물의 사체 검안(檢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업(業)을 말한다.
3의2. "동물보건사"란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4. "동물병원"이란 동물진료업을 하는 장소로서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한 진료기관을 말한다.

수의사법 시행령

제2조(정의) 「수의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1. 노새·당나귀
2. 친칠라·밍크·사슴·메추리·꿩·비둘기
3. 시험용 동물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동물로서 포유류·조류·파충류 및 양서류

수의사법 시행규칙

수의사법

제3조(직무) 수의사는 동물의 진료 및 보건과 축산물의 위생 검사에 종사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제2장 수의사

제4조(면허) 수의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8조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수의사법 시행령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조(면허증의 발급) ① 법 제4조에 따라 수의사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8조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서
2. 법 제5조제3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서

②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영 제10조 및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하여 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 및 응시자격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수의사 면허증 발급 대상자 명단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한글·영문 및 한문)
2. 주소

수의사법

--

수의사법 시행령

--

수의사법 시행규칙

3.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생년월일 및 성별) 4. 출신학교 및 졸업 연월일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합격자 발표일부터 50일 이내(법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수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실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실 등에 대한 조회가 끝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수의사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수의사법

수의사법 시행령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의사가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수의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마약, 대마(大麻), 그 밖의 향정신성의약품(尙精神性醫藥品) 중독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수의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이 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동물보호법」, 「의료법」, 「약사법」, 「식품위생법」 또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수의사법

제6조(면허의 등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면허를 내줄 때에는 면허에 관한 사항을 면허대장에 등록하고 그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허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③ 면허의 등록과 면허증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 <삭제>

수의사법 시행령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3조(면허증 및 면허대장 등록사항) ① 법 제6조에 따른 수의사 면허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6조에 따른 면허대장에 등록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면허번호 및 면허 연월일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성명·국적·생년월일·여권번호 및 성별)
3. 출신학교 및 졸업 연월일
4. 면허취소 또는 면허효력 정지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5. 제4조에 따라 면허증을 재발급하거나 면허를 재부여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6. 제5조에 따라 면허증을 갱신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제14조의8(자격증 및 자격대장 등록사항) ① 법 제16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6조에 따른 동물보건사 자격증은 별지 제11호의5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6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6조에 따른 동물보건사 자격대장에 등록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격번호 및 자격 연월일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성명·국적·생년월일·여권번호 및 성별)
3. 출신학교 및 졸업 연월일
4.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수의사법

--

수의사법 시행령

--

수의사법 시행규칙

5. 제14조의9에 따라 자격증을 재발급 하거나 자격을 재부여했을 때에는 그 사유

제14조의9(자격증의 재발급 등) ① 법 제16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6조에 따라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격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의6서식의 동물 보건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잃어버린 경우: 별지 제11호의7서식의 동물보건사 자격증 분실 경위서와 사진 1장
2.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자격증 원본과 사진 1장
3.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자격증 원본과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사진 1장

② 법 제16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6조에 따라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자격을 다시 받게 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6서식의 동물보건사 자격증 재부여 신청서에 자격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됐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법 제3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수의사법

제8조(수의사 국가시험) ① 수의사 국가시험은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한다.

② 수의사 국가시험은 동물의 진료에 필요한 수의학과 수의사로서 갖추어야 할 공중위생에 관한 지식 및 기능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다.

④ 수의사 국가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의사법 시행령

제3조(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 법 제8조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의 시험문제 출제 및 합격자 사정(査定) 등 국가시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과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수의(獸醫)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된다.

③ 위원은 수의학 및 공중위생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두며,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국가시험 제도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수의사법 시행규칙

수의사법

수의사법 시행령

수의사법 시행규칙

2. 제9조의2에 따른 출제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국가시험의 시험문제 출제, 과목별 배점 및 합격자 사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가시험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⑦ 이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의2(위원의 해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수의사법

수의사법 시행령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제8조(공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11조에 따른 행정기관에 국가시험의 관리업무를 맡기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조에서 같다)은 국가시험을 실시하려면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시험과목, 시험장소, 시험일시, 응시원서 제출기간,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수의사법

수의사법 시행령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9조(시험과목 등) ① 국가시험의 시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초수의학
2. 예방수의학
3. 임상수의학
4. 수의법규·축산학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과목별 시험내용 및 출제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③ 국가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기시험 또는 구술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④ 국가시험은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제9조의2(출제위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수의학 및 공중위생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험과목별로 시험문제의 출제 및 채점을 담당할 사람(이하 "출제위원"이라 한다) 2명 이상을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출제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해당 국가시험의 합격자 발표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수의사법

수의사법 시행령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출제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며, 국가시험의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된 공무원은 제외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수의사법 시행규칙

수의사법

제9조(응시자격) ① 수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수의학과를 포함한다)을 졸업하고 수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 이 경우 6개월 이내에 졸업하여 수의학사 학위를 받을 사람을 포함한다.

2. 외국에서 제1호 전단에 해당하는 학교(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그 국가의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

② 제1항제1호 후단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기간에 수의학사 학위를 받지 못하면 처음부터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9조의2(수험자의 부정행위) ①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수의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그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은 그 후 두 번까지는 제8조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수의사법 시행령

제10조(응시 절차)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관계 전문기관의 국가시험 관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국가시험의 관리를 맡길 수 있는 관계 전문기관은 수의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행정기관으로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에 국가시험의 관리업무를 맡기는 경우에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해당 행정기관(이하 이 항에서 "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에 둔다. 이 경우 제4조를 적용할 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은 각각 "시험관리기관의 장"으로 보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보며,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은 "시험관리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수의사법 시행규칙

수의사법

제10조(무면허 진료행위의 금지)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다. 다만,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2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같은 법에 따라 수산생물을 진료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료는 예외로 한다.

수의사법 시행령

제12조(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법 제10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료"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수의학과를 포함한다)에서 수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지도교수의 지시·감독을 받아 전공 분야와 관련된 실습을 하기 위하여 하는 진료행위
2. 제1호에 따른 학생이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지도교수의 지도·감독을 받아 양축 농가에 대한 봉사활동을 위하여 하는 진료행위
3. 축산 농가에서 자기가 사육하는 다음 각 목의 가축에 대한 진료행위
가. 「축산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허가 대상인 가축사육업의 가축
나. 「축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등록 대상인 가축사육업의 가축
다.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
4.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업무로 수행하는 무상 진료행위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8조(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영 제12조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업무로 수행하는 무상 진료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고시하는 도서·벽지(僻地)에서 이웃의 양축 농가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하여 비업무로 수행하는 다른 양축 농가의 무상 진료행위
2. 사고 등으로 부상당한 동물의 구조를 위하여 수행하는 응급처치행위

수의사법

제11조(진료의 거부 금지) 동물진료업을 하는 수의사가 동물의 진료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진단서 등) ① 수의사는 자기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아니하고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하지 못하며, 「약사법」 제85조 제6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이하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이라 한다)을 처방·투약하지 못한다. 다만,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수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다른 수의사가 진료부 등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료 중 폐사(斃死)한 경우에 발급하는 폐사 진단서는 다른 수의사에게서 발급받을 수 있다.

③ 수의사는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동물에 대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발급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의사법 시행령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9조(진단서의 발급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폐사 진단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단서 및 폐사 진단서에는 연도별로 일련번호를 붙이고, 그 부분(副本)을 3년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0조(증명서 등의 발급) 법 제12조에 따라 수의사가 발급하는 증명서 및 검안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산 증명서: 별지 제6호서식
2. 사산 증명서: 별지 제7호서식
3. 예방접종 증명서: 별지 제8호서식
4. 검안서: 별지 제9호서식

제11조(처방전의 서식 및 기재사항 등)

① 법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수의사가 발급하는 처방전은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수의사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서식, 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한 축산농장에 상시고용된 수의사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해당 농장,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동물에게 투여할 목적으로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시고용된 수의사의 범위, 신고방법, 처방전 발급 및 보존 방법, 진료부 작성 및 보고, 교육, 준수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수의사법 시행령



수의사법 시행규칙

② 처방전은 동물 개체별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같은 축사(지붕을 같이 사용하거나 지붕에 준하는 인공구조물을 같이 또는 연이어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에서 동거하고 있는 동물들에 대하여 하나의 처방전으로 같이 처방(이하 "군별 처방"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질병 확산을 막거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일 것
2. 처방 대상 동물의 종류가 같을 것
3. 처방하는 동물용 의약품이 같을 것

③ 수의사는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후 서명(「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이 경우 처방전 부분(副本)을 처방전 발급일부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

1. 처방전의 발급 연월일 및 유효기간(7일을 넘으면 안 된다)
2. 처방 대상 동물의 이름(없거나 모르는 경우에는 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임의로 정한 것), 종류, 성별, 연령(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연령), 체중 및 임신 여부. 다만, 군별 처방인 경우에는 처방 대상 동물들의 축사번호, 종류 및 총 마릿수를 적는다.

수의사법

--

수의사법 시행령

--

수의사법 시행규칙

<p>3.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 농장에 있는 동물에 대한 처방전인 경우에는 농장명도 적는다.</p> <p>4. 동물병원 또는 축산농장의 명칭, 전화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p> <p>5.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처방 내용</p> <p>가. 「약사법」 제85조제6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이하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이라 한다):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의 성분명, 용량, 용법, 처방일수(30일을 넘으면 안 된다) 및 판매 수량(동물용 의약품의 포장 단위로 적는다)</p> <p>나.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이 아닌 동물용 의약품인 경우: 가목의 사항. 다만, 동물용 의약품의 성분명 대신 제품명을 적을 수 있다.</p> <p>6. 처방전을 작성하는 수의사의 성명 및 면허번호</p> <p>④ 제3항제1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수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처방전의 유효기간 및 처방일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p>
--

수의사법

--

수의사법 시행령

--

수의사법 시행규칙

1. 질병예방을 위하여 정해진 연령에 같은 동물용 의약품을 반복 투약하여야 하는 경우
 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 ⑤ 제3항제5호가목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이거나 안정적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수의사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품명을 성분명과 함께 쓸 수 있다. 이 경우 성분별로 제품명을 3개 이상 적어야 한다.

제12조(축산농장 등의 상시고용 수의사의 신고 등) ① 법 제12조제5항 전단에 따라 축산농장(「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동물실험시행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동물원 또는 수족관(이하 이 조에서 “축산농장등”이라 한다)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로 신고(이하 “상시고용 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수의사법

--

수의사법 시행령

--

수의사법 시행규칙

1. 해당 축산농장등에서 1년 이상 일하고 있거나 일할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체결한 근로계약서 사본
나.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라. 그 밖에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수의사 면허증 사본

② 수의사가 상시고용된 축산농장등이 두 곳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한 곳에 대해서만 상시고용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한 해당 축산농장등의 동물에 대해서만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다.

③ 법 제12조제5항 후단에 따른 상시고용된 수의사의 범위는 해당 축산농장등에 1년 이상 상시고용되어 일하는 수의사로서 1개월당 60시간 이상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상시고용 신고를 한 수의사(이하 "신고 수의사"라 한다)가 발급하는 처방전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다만,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의 처방일수는 7일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수의사법

수의사법 시행령

수의사법 시행규칙

- ⑤ 신고 수의사는 처방전을 발급하는 진료를 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진료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의 진료부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신고 수의사는 제26조에 따라 매년 수의사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⑦ 신고 수의사는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의 구입 명세를 작성하여 그 구입일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하며,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이 해당 축산농장등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농장주 또는 운영자를 지도해야 한다.

수의사법

제12조의2(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의 발급 등) ① 의사 (제12조제5항에 따른 축산농장,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동물에게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투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처방전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의사는 제1항에 따라 처방전을 발급할 때에는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의사처방관리시스템(이하 "의사처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처방전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출장 진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방전을 발급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처방전을 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수의사법 시행령

제12조의2(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 법 제12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응급을 요하는 동물의 수술 또는 처치를 말한다.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처방전의 발급 등) ① 법 제12조의2제2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처방전을 수기로 작성하여 발급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의2제3항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입력 연월일 및 유효기간(7일을 넘으면 안 된다)
2. 제11조제3항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사항
3.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 농장에 있는 동물에 대한 처방인 경우에는 농장명도 적는다.
4. 입력하는 의사의 성명 및 면허번호

수의사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의사는 본인이 직접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조제·투약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처방전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의사는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의 명칭, 용법 및 용량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처방전의 서식, 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처방전을 발급한 수의사는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자가 처방전에 표시된 명칭·용법 및 용량 등에 대하여 문의한 때에는 즉시 이에 응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응급한 동물을 진료 중인 경우
2. 동물을 수술 또는 처치 중인 경우
3. 그 밖에 문의에 응답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의사법 시행령

수의사법 시행규칙

수의사법

제12조의3(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수의사법 시행령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이하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한다.

1.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정보의 제공
2.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처방전의 발급 및 등록
3.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관한 사항의 입력 관리
4.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의 처방·조제·투약 등 관련 현황 및 통계 관리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개인별 접속 및 보안을 위한 시스템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수의사법

제13조(진료부 및 검안부) ① 수의사는 진료부나 검안부를 갖추어 두고 진료하거나 검안한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료부 또는 검안부의 기재사항, 보존기간 및 보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진료부 또는 검안부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수의사법 시행령

Blank area for the implementation regulations.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3조(진료부 및 검안부의 기재사항)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진료부 또는 검안부에는 각각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하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진료부

가. 동물의 품종·성별·특징 및 연령

나. 진료 연월일

다.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라. 병명과 주요 증상

마. 치료방법(처방과 처치)

바. 사용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과 수량

사. 동물등록번호(「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동물만 해당한다)

2. 검안부

가. 동물의 품종·성별·특징 및 연령

나. 검안 연월일

다.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라. 폐사 연월일(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추정 연월일) 또는 살처분 연월일

마. 폐사 또는 살처분의 원인과 장소

바. 사체의 상태

사. 주요 소견

수의사법

제14조(신고) 수의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실태와 취업상황(근무지가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등을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수의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진료기술의 보호) 수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기구 등의 우선 공급) 수의사는 진료행위에 필요한 기구, 약품, 그 밖의 시설 및 재료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권리를 가진다.

수의사법 시행령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4조(수의사의 실태 등의 신고 및 보고) ① 법 제14조에 따른 수의사의 실태와 취업 상황 등에 관한 신고는 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수의사회의 장(이하 "수의사회장"이라 한다)이 수의사의 수급상황을 파악하거나 그 밖의 동물의 진료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고하도록 공고하는 경우에 하여야 한다.

② 수의사회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신고의 내용·방법·절차와 신고기간 그 밖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신고개시일 6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수의사법

제2장의2 동물보건사

제16조의2(동물보건사의 자격)

동물보건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의 동물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하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라 한다)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수의사법 시행령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4조의2(동물보건사의 자격인정) ①

- 법 제16조의2에 따라 동물보건사 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16조의3에 따른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이하 "동물보건사자격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서
 2. 법 제5조제3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서
 3. 법 제16조의2 또는 법률 제16546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사진(규격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하며, 이하 같다) 2장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수의사법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을
가진 사람

수의사법 시행령

수의사법 시행규칙

1. 법 제16조의2 또는 법률 제16546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각
호에 따른 자격
2. 법 제16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에 따른 자격인정을 한
경우에는 동물보건사자격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부터 50일 이내(법
제16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을 받은 사실 등에 대한
조회가 끝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14조의3(동물 간호 관련 업무) 법
제16조의2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간호 관련 업무”란 제14조의7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수의사법

제16조의3(동물보건사의 자격시험) ①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은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격시험의 관리를 위탁한 때에는 그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수의사법 시행령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4(동물보건사의 자격시험의 실시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보건사자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시험일 90일 전까지 시험일시,
시험장소, 응시원서 제출기간 및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② 동물보건사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초 동물보건학
2. 예방 동물보건학
3. 임상 동물보건학
4. 동물 보건·윤리 및 복지 관련 법규

③ 동물보건사자격시험은 필기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 동물보건사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 제출
기간에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원서(전자
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동물보건사자격시험의 합격자는
제2항에 따른 시험과목에서 각 과목당
시험점수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제5항까지에서 규정한사항 외에
동물보건사자격시험에 필요한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수의사법

제16조의4(양성기관의 평가인증) ①

동물보건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수의사법 시행령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4조의5(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평가인증) ①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이하 "평가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동물보건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양성기관의 업무 수행에 적합할 것
2.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교수 및 운영 인력을 갖추어 것
3. 교육시설·장비 등 교육여건과 교육환경이 양성기관의 업무 수행에 적합할 것

②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으려는 양성기관은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양성기관 평가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양성기관의 설립 및 운영 현황 자료
 2. 제1항 각 호의 평가인증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및 자료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평가인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양성기관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수의사법

수의사법 시행령

수의사법 시행규칙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1호의4서식의 양성기관 평가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인증의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제14조의6(양성기관의 평가인증 취소)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양성기관의 평가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평가인증의 취소 사유와 10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통보해야 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소명자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평가인증을 취소한다.

수의사법

제16조의5(동물보건사의 업무) ①

동물보건사는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6(준용규정) 동물보건사에 대해서는 제5조, 제6조, 제9조의2, 제14조, 제32조제1항제1호·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34조, 제36조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의사"는 "동물보건사"로,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본다.

수의사법 시행령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4조의7(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동물보건사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의 간호 업무: 동물에 대한 관찰, 체온·심박수 등 기초 검진 자료의 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2. 동물의 진료 보조 업무: 약물 도포, 경구 투여, 마취·수술의 보조 등 수의사의 지도 아래 수행하는 진료의 보조

수의사법

제3장 동물병원

제17조(개설) ① 수의사는 이 법에 따른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다.

② 동물병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아니면 개설할 수 없다.

1. 의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동물진료법인"이라 한다)
4.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
5.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③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④ 시장·군수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동물병원의 시설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의사법 시행령

제13조(동물병원의 시설기준) ①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동물병원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설자가 의사인 동물병원: 진료실·처치실·조제실, 그 밖에 청결유지와 위생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는 것. 다만, 축산 농가가 사육하는 가축(소·말·돼지·염소·사슴·닭·오리를 말한다)에 대한 출장진료만을 하는 동물병원은 진료실과 처치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2. 개설자가 의사가 아닌 동물병원: 진료실·처치실·조제실·임상병리검사실, 그 밖에 청결유지와 위생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는 것.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동물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의 동물만을 진료·처치하기 위하여 직접 설치하는 동물병원의 경우에는 임상병리검사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세부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5조(동물병원의 개설신고) ①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개설하려는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설신고자 외에 그 동물병원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의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사에 대한 제2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2. 의사 면허증 사본 1부
3.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확인서 1부[영 제1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출장진료만을 하는 동물병원(이하 "출장진료전문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수의사법

--

수의사법 시행령

--

수의사법 시행규칙

② 법 제17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개설하려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2. 동물병원에 종사하려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3. 법인의 설립 허가증 또는 인가증 사본 및 정관 각 1부(비영리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개설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발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고, 그 사본을 법 제23조에 따른 수의사회에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출장진료전문병원에 대하여 발급하는 신고확인증에는 출장진료만을 전문으로 한다는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

수의사법

수의사법 시행령

수의사법 시행규칙

⑤ 동물병원의 개설신고자는 법 제17조 제3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신고확인증과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 제13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진료실과 처치실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동물병원 평면도를, 제5호에 해당하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확인서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1. 개설 장소의 이전
2. 동물병원의 명칭 변경
3. 진료 수의사의 변경
4. 출장진료전문병원에서 출장진료전문병원이 아닌 동물병원으로의 변경
5. 출장진료전문병원이 아닌 동물병원에서 출장진료전문병원으로의 변경
6. 동물병원 개설자의 변경

⑥ 시장·군수는 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신고대장 및 신고확인증의 뒤쪽에 그 변경내용을 적은 후 신고확인증을 내주어야 한다.

수의사법

수의사법 시행령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7조의2(동물병원의 관리의무)

동물병원 개설자는 자신이 그 동물병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병원 개설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동물병원을 관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수의사 중에서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의3(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운영) ①

동물을 진단하기 위하여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려는 동물병원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②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할 것
2. 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자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면 동물병원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조치할 것

수의사법

3. 안전관리 책임자가 안전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그 직으로부터 해임하고 다른 직원을 안전관리 책임자로 선임할 것
4.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제17조의5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 또는 측정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被曝)관리를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범위, 신고, 검사, 측정 및 피폭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수의사법 시행령

수의사법 시행규칙

수의사법

수의사법 시행령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7조의4(동물 진단용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① 동물을 진단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의료장비(이하 "동물 진단용 특수의료장비"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려는 동물병원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장비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 진단용 특수의료장비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인정기준에 맞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 진단용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한 후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동물병원 개설자는 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동물 진단용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의5(검사·측정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검사용 장비를 갖추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을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검사기관 또는 측정기관(이하 "검사·측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수의사법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측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등의 검사에 관한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3. 업무의 정지 기간에 검사·측정업무를 한 경우
4.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측정기관의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검사·측정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측정기관의 지정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취소, 업무 정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검사·측정기관의 장은 검사·측정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의사법 시행령

수의사법 시행규칙

수의사법

제18조(휴업·폐업의 신고)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진료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의 휴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 <삭제>

제20조 <삭제>

수의사법 시행령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8조(휴업·폐업의 신고) ① 법 제18조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진료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고서에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 동물병원의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그 사본을 수의사회에 송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고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장·군수는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해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받아 이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수의사법

제20조의2(발급수수료) ①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진단서 등 발급수수료 상한액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② 동물병원 개설자는 의료기관이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동물 소유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징수하는 진단서 등 발급수수료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게시하여야 한다.
③ 동물병원 개설자는 제2항에서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수의사법 시행령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9조(발급수수료)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처방전 발급수수료의 상한액은 5천원으로 한다.
②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및 처방전의 발급수수료의 금액을 정하여 접수창구나 대기실에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수의사법

제21조(공수의) ① 시장·군수는 동물진료 업무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에게는 제3호와 제6호의 업무만 위촉할 수 있다.

1. 동물의 진료
 2. 동물 질병의 조사·연구
 3. 동물 전염병의 예찰 및 예방
 4. 동물의 건강진단
 5. 동물의 건강증진과 환경위생 관리
 6. 그 밖에 동물의 진료에 관하여 시장·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라 동물진료 업무를 위촉받은 수의사[이하 "공수의(公獸醫)"라 한다]는 시장·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 위촉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제22조(공수의의 수당 및 여비) ① 시장·군수는 공수의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수당과 여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수의사법 시행령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1조(축산 관련 비영리법인)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및 조합
2. 「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제22조(공수의의 업무 보고) 공수의는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매월 그 추진결과를 다음 달 10일까지 배치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군수(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그 내용을 종합하여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염병 발생 및 공중위생상 긴급한 사항은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수의사법

제3장의 2 동물진료법인

- 제22조의2(동물진료법인의 설립 허가 등)** ① 제17조제2항에 따른 동물진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동물진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동물병원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 ③ 동물진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④ 이 법에 따른 동물진료법인이 아니면 동물진료법인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수의사법 시행령

제13조의2(동물진료법인의 설립 허가 신청)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동물진료법인(이하 "동물진료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자는 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의3(동물진료법인의 재산 처분 또는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재산 처분이나 정관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는 동물진료법인은 재산처분허가신청서 또는 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의사법 시행규칙

수의사법

제22조의3(동물진료법인의 부대사업)

① 동물진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동물병원에서 동물진료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동물진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동물진료나 수의학에 관한 조사·연구
 2.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 주차장의 설치·운영
 3. 동물진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동물진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제2호의 부대사업을 하려는 동물진료법인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대사업을 하려는 동물진료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동물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수의사법 시행령

제13조의4(동물진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 사업) 법 제22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진료부(진단서 및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전산으로 작성·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운영 사업
2. 동물의 진단 등을 위하여 의료기기로 촬영한 영상기록을 저장·전송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운영 사업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2조의7(부대사업의 신고 등) ① 동물진료법인은 법 제22조의3제3항 전단에 따라 부대사업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동물병원 개설 신고확인증 사본
 2. 부대사업의 내용을 적은 서류
 3. 부대사업을 하려는 건물의 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 ② 시·도지사는 부대사업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부대사업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③ 동물진료법인은 법 제22조의3제3항 후단에 따라 부대사업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부대사업 신고증명서 원본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④ 시·도지사는 부대사업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부대사업 신고증명서 원본에 변경 내용을 적은 후 돌려주어야 한다.

수의사법

제22조의4(「민법」의 준용) 동물진료법인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의5(동물진료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동물진료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업을 한 때
2. 설립된 날부터 2년 내에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
3. 동물진료법인이 개설한 동물병원을 폐업하고 2년 내에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감독을 위하여 내린 명령을 위반한 때
5.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부대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수의사법 시행령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2조의8(법인사무의 검사·감독) ① 시·도지사는 법 제22조의4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37조에 따라 동물진료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동물진료법인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최근 5년까지의 것을 대상으로, 제7호 및 제8호의 서류는 최근 3년까지의 것을 그 대상으로 할 수 있다.

1. 정관
2. 임원의 명부와 이력서
3. 이사회 회의록
4. 재산대장 및 부채대장
5.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대장
6.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명서류
7. 업무일지
8. 주무관청 및 관계 기관과 주고받은 서류

② 시·도지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동물진료법인을 방문하여 그 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수의사법

수의사법 시행령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2조의9(설립등기 등의 보고) 동물진료법인은 법 제22조의4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및 제52조의2에 따라 동물진료법인 설립등기, 분사무소 설치등기, 사무소 이전등기, 변경등기 또는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를 한 경우에는 해당 등기를 한 날 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2조의10(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동물진료법인의 대표자 또는 청산인은 법 제22조의4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분 사유
2. 처분하려는 재산의 종류·수량 및 금액
3. 재산의 처분 방법 및 처분계획서

수의사법

Blank box for '수의사법' (Veterinary Law).

수의사법 시행령

Blank box for '수의사법 시행령' (Veterinary Law Enforcement Regulations).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2조의11(해산신고 등) ① 동물진료 법인이 해산(파산의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인은 법 제22조의4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8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1. 해산 연월일
2. 해산 사유
3.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4.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사항

② 청산인이 제1항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1. 해산 당시 동물진료법인의 재산목록
2. 잔여재산 처분 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3. 해산 당시의 정관
4. 해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수의사법

--

수의사법 시행령

--

수의사법 시행규칙

③ 동물진료법인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해산 예정 연월일, 해산의 원인과 청산인이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해산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 당시 동물진료법인의 재산목록 및 그 감정평가서
2. 잔여재산 처분 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3. 신청 당시의 정관

제22조의12(청산 종결의 신고) 동물진료법인의 청산인은 그 청산을 종결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의4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수의사법

제4장 대한수의사회

- 제23조(설립)** ① 수의사는 수의업무의 적정한 수행과 수의학술의 연구·보급 및 수의사의 윤리 확립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수의사회(이하 "수의사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 ② 수의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수의사는 제1항에 따라 수의사회가 설립된 때에는 당연히 수의사회의 회원이 된다.

수의사법 시행령

제18조의2(윤리위원회의 설치)

수의사회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수의업무의 적정한 수행과 수의사의 윤리 확립을 도모하고, 법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의견의 제시 등을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4조(수의사의 실태 등의 신고 및 보고)

- ① 법 제14조에 따른 수의사의 실태와 취업 상황 등에 관한 신고는 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수의사회의 장(이하 "수의사회장"이라 한다)이 수의사의 수급상황을 파악하거나 그 밖의 동물의 진료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고하도록 공고하는 경우에 하여야 한다.
- ② 수의사회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신고의 내용·방법·절차와 신고기간 그 밖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신고개시일 6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수의사법

제24조(설립인가) 수의사회를 설립하려는 경우 그 대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5조(지부) 수의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에 지부(支部)를 설치할 수 있다.

제26조(「민법」의 준용) 수의사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7조 <삭제>

28조 <삭제>

제29조(경비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동물의 건강증진 및 공중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제37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의사회의 운영 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수의사법 시행령

제14조(수의사회의 설립인가) 법 제24조에 따라 수의사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자산 명세서
3.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4. 설립 결의서
5. 설립 대표자의 선출 경위에 관한 서류
6. 임원의 취임 승낙서와 이력서

제18조(지부의 설치) 수의사회는 법 제25조에 따라 지부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립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수의사법 시행규칙

수의사법

제5장 감독

제30조(지도와 명령)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동물진료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공중위생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의 시설·장비 등이 필요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는 동물병원이 제17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7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수공통감염병의 방역(防疫)과 진료를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협조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수의사법 시행령

제20조(지도와 명령)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에 할 수 있는 지도와 명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 기구·장비의 대(對)국민 지원 지도와 동원 명령
2. 공중위생상 위해(危害) 발생의 방지 및 동물 질병의 예방과 적정한 진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업무개선의 지도와 명령
3. 그 밖에 가축전염병의 확산이나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인한 공중위생상의 중대한 위해 발생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는 지도와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2조의14(수의사 등에 대한 비용 지급 기준)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의 시설·장비 등이 필요한 경우의 비용 지급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수의사법

제31조(보고 및 업무 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의사회로 하여금 회원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 상황과 그 밖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에 대하여 질병 진료 상황과 가축 방역 및 수의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부 및 검안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수의사법 시행령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2조의15(보고 및 업무감독) 법

제31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회원의 실태와 취업상황, 그 밖의 수의사회의 운영 또는 업무에 관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수의사법

제32조(면허의 취소 및 면허효력의 정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2. 제2항에 따른 면허효력 정지기간에 수의업무를 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3회 이상 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였을 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진료기술상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하였을 때

2.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였을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수의사법 시행령

제20조의2(과잉진료행위 등) 법

제32조제2항제6호에서 “과잉진료행위나 그 밖에 동물병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불필요한 검사·투약 또는 수술 등 과잉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시술하는 행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3. 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 행위

4. 동물병원의 개설자격이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동물을 진료하는 행위

5. 다른 동물병원을 이용하려는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동물병원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

6. 법 제11조, 제12조제1항·제3항, 제13조제1항·제2항 또는

제17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3조(과잉진료행위 등) 영 제20조의2 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소독 등 병원 내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시술하여 질병이 악화되게 하는 행위

2. 예후가 불명확한 수술 및 처치 등을 할 때 그 위험성 및 비용을 알리지 아니하고 이를 하는 행위

3. 유효기간이 지난 약제를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진료가 필요한 동물을 방치하여 질병이 악화되게 하는 행위

제24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수의사법

4. 임상수의학적(臨床獸醫學的)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를 하였을 때

5. 학위 수여 사실을 거짓으로 공표하였을 때

6. 과잉진료행위나 그 밖에 동물병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다시 내줄 수 있다.

1. 제1항제1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났을 때

④ 동물병원은 해당 동물병원 개설자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면허효력 정지기간에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다.

수의사법 시행령

수의사법 시행규칙

수의사법

제33조(동물진료업의 정지)

시장·군수는 동물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동물진료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개설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할 때
2. 무자격자에게 진료행위를 하도록 한 사실이 있을 때
3. 제17조제3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제18조 본문에 따른 휴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할 때
5. 제17조의2를 위반하여 동물병원 개설자 자신이 그 동물병원을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였을 때
6. 동물병원이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7. 동물병원이 제30조제2항에 따른 사용 제한 또는 금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8. 동물병원이 제31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였을 때

수의사법 시행령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5조(신고확인증의 제출 등) ①

동물병원 개설자가 법 제33조에 따라 동물진료업의 정지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고확인증을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법 제33조에 따라 동물진료업의 정지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신고대장에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하며, 제출된 신고확인증의 뒤쪽에 처분의 요지와 업무정지 기간을 적고 그 정지기간이 만료된 때에 돌려주어야 한다.

수의사법

제33조의2(과징금 처분) ①

시장·군수는 동물병원이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진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기한 안에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수의사법 시행령

제20조의3(과징금의 부과 등) ①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②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자세히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군수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시장·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수의사법 시행규칙

수의사법

제6장 보칙

제34조(연수교육)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의사에게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연수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 <삭제>

수의사법 시행령

제21조(업무의 위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7조 제3항에 따라 법 제34조에 따른 수의사의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수의사회에 위탁한다.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6조(수의사 연수교육) ①

수의사회장은 법 제34조제3항 및 영 제21조에 따라 연수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의 대상자는 동물진료업에 종사하는 수의사로 하고, 그 대상자는 매년 10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10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에는 수의사회장이 지정하는 교육과목에 대해 5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연수교육의 교과내용·실시방법, 그 밖에 연수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수의사회장이 정한다.

④ 수의사회장은 연수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의 연수교육의 실적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수의사회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연수교육 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의사법

제36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검사·측정기관의 지정취소
2. 제30조제2항에 따른 시설·장비 등의 사용금지 명령
3. 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의사 면허의 취소

제3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 업무, 제17조의4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검사 업무,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검사·측정기관의 지정 업무,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지정 취소 업무 및 제17조의5제4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에 관한 업무를 수의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수의사법 시행령

제20조의4(권한의 위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2조제5항 전단에 따른 축산농장,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의 상시고용 신고의 접수
 2. 법 제12조제5항 후단에 따른 축산농장,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의 진료부 보고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 업무
 2. 법 제17조의4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검사 업무

수의사법 시행규칙

수의사법

수의사법 시행령

수의사법 시행규칙

3. 법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검사·측정기관의 지정 업무
 4. 법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지정 취소 업무
 5. 법 제17조의5제4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의 수리 업무
-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제21조(업무의 위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법 제34조에 따른 수의사의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수의사회에 위탁한다.

수의사법

제38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6조(제16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의사 면허증 또는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
2. 제8조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 2의2. 제16조의3에 따른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3. 제17조제3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의 신고를 하려는 자
4. 제32조제3항(제16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수의사 면허 또는 동물보건사 자격을 다시 부여받으려는 사람

수의사법 시행령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8조(수수료) ① 법 제38조에 따라 내야 하는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법 제6조(법 제16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의사 면허증 또는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 2천원
2. 법 제8조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2만원
- 2의2. 법 제16조의3에 따른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2만원
3.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의 신고를 하려는 자: 5천원
4. 법 제32조제3항(법 제16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수의사 면허 또는 동물보건사 자격을 다시 부여받으려는 사람: 2천원

② 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4호의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야 하며, 같은 항 제3호의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수의사 국가시험 또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원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정보통신망 이용료 등은 이용자가 부담한다)으로 납부해야 한다.

수의사법

--

수의사법 시행령

--

수의사법 시행규칙

③ 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의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접수마감일부더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3.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사람이 시험일 이후 30일 전까지 응시수수료의 반환을 신청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 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조부모·형제·자매, 배우자 및 자녀가 사망한 경우(시험일부더 거꾸로 계산하여 7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로 한정한다)
 - 나.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찰·치료·입원 또는 격리 처분을 받은 경우

수의사법

제7장 벌칙

제3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併科)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제16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의사 면허증 또는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
2. 제10조를 위반하여 동물을 진료한 사람
3.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한 동물진료법인
2. 제2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진료법인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제40조 <삭제>

수의사법 시행령

수의사법 시행규칙

수의사법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진료 요구를 거부한 사람
2.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동물진료업을 한 자
3. 제17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동물 진단용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한 사람
- 1의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직접 진료하지 아니하고 처방·투약한 자
- 1의3.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발급을 거부한 자
- 1의4.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처방전을 발급한 수의사
- 1의5.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처방전을 발급하지 아니한 자
- 1의6. 제12조의2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하지 아니하고 처방전을 발급한 자

수의사법 시행령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수의사법 시행규칙

수의사법

1의7. 제12조의2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3일 이내에 처방전을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1의8. 제12조의2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의 명칭, 용법 및 용량 등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는 사항을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2. 제13조를 위반하여 진료부 또는 검안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진료 또는 검안한 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사람

2의2. 제14조(제16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7조의2를 위반하여 동물병원 개설자 자신이 그 동물병원을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4. 제17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한 자

4의2.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5. 제17조의3제3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하지 아니한 자

수의사법 시행령

수의사법 시행규칙

수의사법

6. 제18조를 위반하여 동물병원의 휴업·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의2. 제2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한 자
6의3. 제2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7. 제30조제2항에 따른 사용 제한 또는 금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31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제16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부과·징수한다.

수의사법 시행령

수의사법 시행규칙

부칙 <법률 제16546호, 2019. 8.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17조, 제17조의3, 제20조의2, 제22조의3, 법률 제5953호 수의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3호의2,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6까지, 제38조 및 제3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6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6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실습교육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이와 동등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한 후 동물병원에서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을 통하여 업무 종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
3.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 중 동물병원에서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을 통하여 업무 종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

제3조(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위한 준비행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6조의4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에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양성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인증의 효과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6조의4의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발생한다.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을 통한 동물진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